

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

사용자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

- 사업장 명칭 및 업종 :
- 사업 주 :
- 소재지 :

사업주휴대폰 :

/ 제조 전화번호 :

F A X :

E-mail : @

* 귀사의 휴대폰 및 이메일은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데 사용됩니다

대행기관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

- 명 칭 : 중소기업중앙회
- 대표자 : 박 성 택
- 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-2

전화번호 : 062-955-0038

F A X : 062-951-9966

“갑”과 “을”은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대행수수료) “갑”은 제2조(대행업무)에 대한 수수료(₩)을 대행기간에 납부한다.

제2조(대행업무 제공)

신청 구분	업무	업무 세부 내용	1인당 수수료	신청여부(✓)
<필수>	도입위탁	·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	40,000원	✓
	취업교육	·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	195,000원	
	각종 신청대행	· 내국인 구인신청,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, 수령 · 사증발급인정서 신청, 수령, 재신청 · 외국인 등록 및 고용변동신고 안내, ·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·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산재·사망신고 · 각종 정보제공 등	61,000원 (3년)	
<선택>	편의제공	· 통역·번역지원 ·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 매뉴얼제공 · 외국인근로자 생활용어집 제공 · 사업장요청시 방문서비스 제공 · 사용자의 고충상담/각종정보제공 · 전용보험가입 및 보험금 신청 지원 · 업무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·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등	72,000원 (3년)	

제3조(수수료 납부) “갑”은 제1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“을”에게 납부하여야 하며, “갑”이 대행계약 전에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라도 필수 대행업무비용(296,000원)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수료 환불) “갑”의 책임이 없음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하거나 인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「수수료 환불기준」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.

(단, 입국후 수수료 환불시 각종신청대행 61,000원중 31,200원을 기본공제한 후 800원*잔여체류기간(월) 계산하고 편의제공비는 2000원*잔여체류기간으로 계산하여 아래 계좌로 환불)

<수수료 환불계좌 정보>

예금주	계좌번호	은행명	비고

제5조(계약서 효력 등) ① 이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은 대행업무 수수료 수납일로 한다.

② 제3조에 정한 기한 내에 대행수수료를 “을”에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서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.

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·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월 일

사용자 (갑)

(인)

대행기관 (을)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(인)

제출처: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☎ 062- 955-0038 팩스번호 062-951-9966

* 첨부 : 사업자등록증 1부